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33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7.

발의자 : 한병도 · 전용기 · 양부남

박상혁 · 윤종군 · 이광희

김승원 · 한민수 · 진선미

진성준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총인구 감소,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지방의 활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최근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개인의 생활환경이 넓어지고, ‘직주분리’, ‘5도2촌’ 등 생활양식도 변화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생활권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람이 늘어남.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5년 1월 약 2,577만명, 체류인구는 약 2,091만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3배 수준으로 확인됨.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생활인구 증가 촉진을 위해서는 이 중주소제나 복수주소제 등 새롭고 획기적인 인구관리 정책 도입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주소를 주민등록지 외의 주소로 등록하는 부등록지 및 준주민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를”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생활인구 및 준주민(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부등록지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인구에”를 “생활인구 및 준주민에”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주민등록법」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외국인은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를 받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관심지역 내의 주소(이하 “부등록지”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와 함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등록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민등록번호
5. 주민등록지
6. 부등록지
7. 부등록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동 전 부등록지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준주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등록지 등록 및 신고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p>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인구감소지역</u> 내 <u>생활인구</u>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활인구</u>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할 수 있다.</p> <p><u><신 설></u></p>	<p>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①</p> <p>-----<u>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u> 내 <u>생활인구</u> 및 <u>준주민</u>(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부등록지가 등록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p> <p>② -----<u>생활인구</u> 및 <u>준주민</u>에-----.</p> <p>제26조의2(「주민등록법」에 대한 특례) ①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주민이 아닌 자(외국인은 제외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를 받아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관</p>

심지역 내의 주소(이하 “부등록지”라 한다)를 주민등록지와 함께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등록지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민등록번호

5. 주민등록지

6. 부등록지

7. 부등록지를 이동하는 경우에
는 이동 전 부등록지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준주민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등록지 등록 및 신고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